

의안번호	2202878
의 퇴 인	서천호의원
회 답 일	2024. 9. 13.
추계번호	24B287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수의를 위촉하고 수당·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억 3,900만원, 2029년 11억 1,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8억 6,500만원(연평균 9억 7,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안 제22조제1항) - 시·도 위촉 공수의	839	942	968	1,006	1,110	4,865	97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각 지방자치단체 취합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제1항(공수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u>시·도지사</u>”라 함) 및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u>시·도 가축방역기관과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음.</u> 다만, <u>시·도 가축방역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음(제1항)</u>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u> 및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현재 시장·군수만 공수의(公獸醫)를 위촉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도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안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u>와</u> 시장·군수는 <u>공수의</u>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u>시장·군수</u>가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1조제1항(공수의)	—	• 미대상 －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도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안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	•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 각 시·도가 위촉하는 공수의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필요한 공수의 인원 수를 예상하기 곤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	• (제2항) 미대상 － 시장·군수가 부담하던 공수의 수당 및 여비(지방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비) 및 시도지사(지방비)가 부담하게 되므로, 전체 소요비용은 변동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 분담률에 따라 국비는 증가하고 지방비는 감소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공수의(公獸醫) 제도

- (개념) 공수의란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수의사
- (대상)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함
- (주요 역할) 동물의 진료,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동물의 건강진단,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그 밖에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을 그 역할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시·군에 978명의 공수의가 위촉된 것으로 조사됨('24년 8월 기준)

[표 2] 전국 시·군 공수의 위촉인원 현황: 2022~2024.8월

(단위: 명)

	2022	2023	2024
공수의 위촉인원	949	965	97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각 지방자치단체 취합자료)

나.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안 제22조제1항)

- 개정안은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지사가 공수의를 위촉하고,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본 추계는 각 시·도별 공수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수당에 대하여 추계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향후 공수의 수요 여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¹⁾

1)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 방역·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임

○ (시·도 공수의 위촉 예정인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도에 공수의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따름

－ 참고로 현행법에 따른 ‘시장·군수’의 범위와 개정안에 따른 ‘시·도지사’의 범위에
서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중복되며,²⁾ 이에 따라 ‘시장·군수’에 해
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공수의 위촉·운영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현재 9명의 공수의 위촉·운영중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7명, 서귀포시 10명의 공수의 위촉·운영중

[표 3] 시·도별 공수의 위촉 및 운영 예정인원: 2025~2029년

(단위: 명)

시·도	2025	2026	2027	2028	2029
서울	0	0	0	0	0
부산	0	0	0	0	0
대구	2	2	2	2	2
인천	2	3	3	3	3
광주	0	0	0	0	0
대전	0	0	0	0	0
울산	2	2	2	2	2
세종	0	1	2	4	6
경기	10	10	10	10	10
강원	9	9	9	9	9
충북	10	15	15	15	20
충남	0	1	2	3	4
전북	6	6	6	6	6
전남	4	4	4	4	4
경북	6	6	6	6	6
경남	14	14	14	14	14
제주	0	0	0	0	0
합계	65	73	75	78	86

주: 1. 해당 연도에 공수의 위촉계획이 없는 시·도는 숫자 0으로 표시함

2. 세종시의 경우 ‘시장·군수’에 해당되어 현재 9명의 공수의 위촉되어 있으며, 해당 연도에 추가
로 위촉 예정인 공수의 숫자를 표시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시장·군수’에 해당되어 제주시 17명, 서귀포시에 10명의 공수의 위촉되
어 있으며, ‘도’ 차원의 공수의 위촉계획은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각 지방자치단체 취합자료)

2) 법 제17조(개설) ① ~ ②(생략)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안 제21조(공수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 (공수의 1인당 수당·여비 단가) 최근 3년간 전국 시·군에 위촉된 공수의 평균 인원 및 평균 예산을 바탕으로 1인당 1,290만원으로 가정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수당·여비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참고자료] 지자체별 공수의 운영 현황 참고

[표 4] 전국 시·군 공수의 위촉인원 및 예산 등 현황: 2022~2024.8월

(단위: 명, 백만원, 백만원/명)

		2022	2023	2024	연평균
공수의 위촉인원(A)		949	965	978	964
수당·여비	예산(B)	12,103	12,312	12,900	12,439
	지급액(C)	11,850	12,163	7,454 (8월 기준)	—
1인당 예산(D=B/A)		12.8	12.8	13.2	12.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각 지방자치단체 취합자료)

- 추계결과, 시·도지사가 공수의를 위촉하고, 수당·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8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시·도 공수의 위촉 및 수당·여비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명, 백만원/명,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시·도 위촉 공수의 수(A)	65	73	75	78	86	—
1인당 수당·여비(B)	12.9	12.9	12.9	12.9	12.9	—
추가재정소요 (C=A×B)	839	942	968	1,006	1,110	4,86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각 지방자치단체 취합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지자체별 공수의 운영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지자체별 공수의 운영 현황: 2022~2024.8월

(단위: 명, 천원)

시·도	시·군	2022			2023			2024.8월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예산	지급액		예산	지급액		예산	지급액
총계		949	12,103,388	11,850,185	965	12,312,288	12,163,292	978	12,900,460	7,453,881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 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 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 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 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 파구, 강동구	24	93,444	93,044	25	94,944	94,944	24	99,264	58,551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5	75,600	75,600	15	75,600	75,600	17	82,800	55,200

시·도	시·군	2022			2023			2024.8월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예산	지급액		예산	지급액		예산	지급액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 성군, 군위군	21	247,200	247,200	21	247,200	247,200	22	247,200	124,400
인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 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15	208,890	201,456	15	206,890	205,676	15	206,790	125,649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6	57,600	57,600	6	57,600	57,600	6	57,600	57,600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	50,160	49,920	5	50,160	49,890	5	50,160	29,970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3	153,600	153,600	13	153,600	153,600	13	153,600	87,300
세종	세종시	9	108,000	108,000	9	108,000	108,000	9	108,000	108,000

시·도	시·군	2022			2023			2024.8월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예산	지급액		예산	지급액		예산	지급액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 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 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 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 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 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 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 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146	1,778,400	1,704,780	146	1,831,200	1,797,255	145	1,978,300	1,126,138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61	728,000	724,000	63	756,000	755,000	66	771,000	436,620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57	696,000	671,124	58	696,000	696,000	58	696,000	404,000

시·도	시·군	2022			2023			2024.8월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예산	지급액		예산	지급액		예산	지급액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87	1,044,000	1,044,000	87	1,044,000	1,044,000	90	1,296,000	756,000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70	840,000	840,000	70	840,000	840,000	70	840,000	560,000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13	1,321,000	1,289,600	118	1,416,000	1,369,839	117	1,440,000	960,000

시·도	시·군	2022			2023			2024.8월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공수의 위촉인원	수당·여비	
			예산	지급액		예산	지급액		예산	지급액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161	2,132,900	2,099,861	169	2,238,500	2,215,851	175	2,357,300	1,262,426
경남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함천	119	2,147,394	2,069,200	118	2,075,394	2,031,637	119	2,095,246	1,043,327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27	421,200	421,200	27	421,200	421,200	27	421,200	258,7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각 지방자치단체 취합자료)